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577

제출년월일 : 2014. 11. 20.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최근의 물가 상승을 감안하고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01년 이후 동결된 사용료를 일부 인상하고,

○ 신규체육시설의 사용료 신설과 「안산시 삼익아파트 상가내 주민운동시설 등 관리운영조례」를 통합하며,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안산시 삼익아파트 상가내 주민운동시설 등 관리운영조례 통합 (안 제1조)

나. 운동장이 없는 학교에 대하여 공공체육시설을 공동 사용(안 제4조)

다. 공공체육시설 내 부설주차장 주차 요금 징수 규정 신설(안 제8조)

라. 관람 수입 사용료 예치금 선납 및 산정 기준 정비(안 제9조)

마. 교육지원청 주관 교육행사, 시대표선수단 훈련, 안산시 연고팀 경기 등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안 제10조)

바. 사용료의 반환 기준 및 요율 완화(안 제13조)

사.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사용료 산정 기준을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개정(부칙)

아. 인조잔디구장, 체육관 등 사용료 인상(별표)

자. 화랑인공암벽등반장 및 호수공원 수영장 사용료 신설(별표)

☐ 개정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4.10.07.~10.27.(20일)

☐ 기타 참고사항 : 붙임

○ 현행조례(전문)

○ 방침결정문(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3개 자치법규 개정(폐지)계획)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서 건립한 체육시설과 안산시 단원구 당쟁이로 22(신길동) 삼익아파트 상가내 수영장 및 목욕장의 사용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6세 이상 12세 이하"를 "12세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13세이상 18세이하의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의한 수급자(의료, 자활, 교육특례자는 제외한다)를"을 "해당하는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의 규정을 적용받는"을 "제4조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하사관 이하의 군인(직업군인은 제외한다) 및 전환복무자(교정시설경비교도, 전투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를 말한다.

제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교육지원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 단위로 체육시설을 학교 운동장으로 공동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사용자가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대회
4. 경기 및 행사 등을 위한 전용사용
5. 체력단련 등의 연습사용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② 제1항에 따라 경기 또는 행사의 원활한 개최 및 공익목적 달성에 필요하면 사전에 대관할 수 있다.

제6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용료의 미납액이 있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음주, 고성방가 등으로 민원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휴무일 및 사용시간) 체육시설의 휴무일 및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조기 : 06:00 ~ 09:00

2. 주간 : 09:00 ~ 18:00

3. 야간 : 18:00 ~ 22:00

4. 설날과 추석 연휴기간은 휴무일로 한다.

제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체육시설 내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 수입에 대해서는 관람권 수입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관람권 발행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미리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④ 총 관람권 발행 매수의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초대권은 관람권 수입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은 일반관람권으로 본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전용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주최(주관)하는 교육 행사

3. 체육진흥, 체육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제 규모의 경기 또는 행사

나.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

4. 고유민속이나 대중문화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

5. 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 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6. 경기도 및 시의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시(체육회) 및 교육지원청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7. 시를 연고로 하며 시장이 구단주인 프로구단 및 실업팀의 정식경기
8. 시를 연고로 하나 시장이 구단주가 아닌 프로구단 및 실업팀의 정식경기 (단, 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제외)
9.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중 "4할"을 "6할"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호 나목 중 "사용료의 6할"을 "전액"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호 다목과 라목을 삭제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에 제3항 중 "가입하여야 한다."를 "가입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산시 삼익아파트 상가내 주민운동시설 등 관리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별표2와 같이 한다."를 "별표2와 같이 하고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로 하고 별표 2의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소관 실·과		체육진흥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체육진흥과장 전 덕 주
	담당·팀장 직위·성명	체육시설담당 조 용 대
	담 당 자 성명·전화	민 정 식 (행정 2108)

[별표 1]

전 용 사 용 료

(단위 : 원)

사용구분				체육경기(행사)		일반행사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안산와~스타디움	육상장(트랙)		주간	40,000	60,000	200,000	300,000
			야간	60,000	90,000	300,000	400,000
	축구잔디구장	주경기장	주간	660,000	2,000,000	1,500,000	2,200,000
			야간	1,500,000	2,400,000	2,000,000	2,600,000
		보조경기장	주간	200,000	300,000	300,000	400,000
			야간	300,000	400,000	400,000	500,000
생활체육관 국궁장			주간	30,800	46,200	61,600	92,400
			야간	39,600	59,400	79,200	118,800
실내체육관			주간	70,000	100,000	140,000	200,000
			야간	90,000	130,000	180,000	260,000
다목적체육관			주간	90,000	135,000	180,000	270,000
			야간	130,000	175,000	220,000	310,000
인조잔디축구장	정규운동장		주간	73,000	110,000	146,000	220,000
			야간	95,000	143,000	190,000	286,000
	중형운동장		주간	58,000	87,000	116,000	174,000
			야간	75,000	113,000	150,000	226,000
	소형운동장		주간	51,000	76,000	102,000	152,000
			야간	66,000	99,000	132,000	198,000
야구장	인조잔디		주간	88,000	132,000	176,000	264,000
			야간	114,000	171,000	228,000	342,000
	마사토		주간	12,000	18,000	18,000	24,000
천연잔디축구장	호수공원		주간	350,000	450,000	1,000,000	1,500,000
	사동해양		주간	180,000	270,000	360,000	540,000
인라인하키장(호수공원)			4시간	40,000	60,000	60,000	90,000
			1일	100,000	150,000	200,000	300,000
실내배드민턴장			1면	20,000	30,000	40,000	60,000
테 니 스 장			주간	7,000	10,000	-	-
			야간	10,000	14,000	-	-
마사토운동장 임시운동장 어린이체육시설			주간	10,000	15,000	15,000	20,000
풋살경기장(인조잔디)			주간	4,000	6,000	8,000	12,000
인공암벽등반장			주간	38,000	48,000	-	-
			야간	48,000	60,000	-	-

비고	1. 조기사용료는 주간사용료에 준하고, 1회 2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체육시설 사용은 1회 4시간(테니스장 · 국궁장 · 풋살경기장은 2시간, 안산 와~스타디움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의 잔디구장은 3시간) 기준으로 하고 필요시 2시간 단위로 운영 할 수 있다. 3. 부대시설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4. 토요일은 공휴일에 준한다. 5. 시설물 설치 및 철거기간은 전용사용으로 간주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6. 매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회 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와~스타디움의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계산하여 추가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7. 체육관 규격 기준 (건축연면적) · 다목적체육관 : 4,000㎡이상 · 실내체육관 : 2,000㎡이상 ~ 4,000㎡미만 · 생활체육관 : 2,000㎡미만 8. 인조잔디축구장 규격 기준 (운동장 면적) · 정규운동장 : 5,000㎡이상 · 중형운동장 : 3,000㎡이상 ~ 5,000㎡미만 · 소형운동장 : 3,000㎡미만 9.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별표 2]

연 습 사 용 료

(단위 : 원)

사용구분		기 준	사용료	
			개 인	단 체
안산 와~스타디움(보조경기장)	육상장(트랙)	1회 2시간	1,500	800
생활 체육관 실내 체육관 국 궁 장		1인 2시간	1,320	660
인조잔디축구장		1인 2시간	1,200	600
실내배드민턴장		1인/4시간 평일	1,000	700
		1인/4시간 주말/공휴일	1,500	1,200
인라인 하키장 (호수공원)		1인 2시간	1,200	600
인공암벽 등반장	평 일	1인 2시간	1,500	-
	공휴일	1인 2시간	2,000	-
	월정기		35,000	-
테니스장	주 간	1인 2시간	3,000	1,500
	야 간	1인 2시간	5,000	1,500
체력단련장	성인 청소년 군인	월	33,000	-
		일	3,300	-
	노인	월	27,500	-
		일	2,750	-
야외수영장		성 인	7,000	3,500
		청소년·군인	5,000	2,500
		어린이	4,000	2,000
실내수영장	성 인	월	55,000	44,000
		일	2,700	2,200
	청소년 군인	월	46,000	37,000
		일	2,300	18,000
	어린이 노인	월	38,000	30,000
		일	1,900	1,500
목욕장	성인 청소년 군인	일	5,000	-
	노인 어린이	일	3,000	-

문화체육관광본부 체육진흥과 민정식 2014-11-14 08:42

비고	1. 단체는 동일팀에 소속된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2.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3. 시·도 단위 이상의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는 안산시 대표선수단의 강화훈련을 위한 무료사용은 대회 및 경기당 10회 이하로 하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5. 체력단련장, 실내수영장은 그린카드 소유자에게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중복감면은 불가) 6. 실내수영장 월 이용자는 지도자 수강료 포함한다. 7.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별표 5]

부 대 시 설 사 용 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라이트시설	안산 와~스타디움	(라이트 전기용량 × kw당 기본료 ÷ 30) + (라이트 전기용량 × 사용시간 × kw당 단가)
	기타 체육시설	1시간 15,000원
무대조명		1시간 20,000원
냉·난방	개별냉난방기	냉방 : 1대당(1시간) 5,000원 난방 : 1대당(1시간) 10,000원
	중앙냉난방기	냉방 : 1시간 35,000원 난방 : 1시간 45,000원
전광판(스코어판 포함)	안산 와~스타디움	기본료 200,000원(영상부문 및 녹화비 포함) + (전광판 전기용량 × 사용시간 × kw당 단가)
	기타 체육시설	1시간 10,000원
음향시설		4시간 20,000원
영 사 기		1시간 20,000원
비 고		1.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2. 무대장치 작업 및 연습 등을 위하여 무대만 사용할 경우 조명료 50% 경감 3. 음향시설 사용 외에 마이크 추가시 1대당 5,000원 부과 4. 운영요원(전광판 조작요원 포함)은 주최측에서 준비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서 건립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체육시설과 안산시 단원구 당쟁이로 22(신길동) 삼익아파트 상가내 수영장 및 목욕장의 사용과 관리운영----------.
제2조(정의)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2. (생략)	1.~2.(현행과 같음)
3.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12세 이하 ----------.
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4.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5.~6.(생략)	5.~6.(현행과 같음)
7.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수급자(의료, 자활, 교육 특례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7. ----------해당하는 사람을 -----.
8.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을 말한다.	8. ----------제4조에 해당하는 ----------.
<신설>	9.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하사관 이하의 군인(직업군인은 제외한다) 및 전환복무자(교정시설경비교도, 전투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을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 ③ (생략)	제4조(사용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시장은 교육지원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 단위로 체육시설을 학교 운동장으로 공동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사용자가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2. 각급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대회 4. 경기 및 행사 등을 위한 전용사용 5. 체력단련 등의 연습사용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사용자가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2.「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대회 4. 경기 및 행사 등을 위한 전용사용 5. 체력단련 등의 연습사용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경기 또는 행사의 원활한 개최 및 공익 목적 달성에 필요하면 사전에 대관할 수 있다.
제6조(사용제한) (생략) 1.~2. (생략)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설> 4. 그 밖에 공익 및 체육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사용제한)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사용료의 미납액이 있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음주, 고성방가 등으로 민원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 및 체육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생략) 3. 야간 : 18:00 ~ 23:00 <신설>	제7조(휴무일 및 사용시간) 체육시설의 휴무일 및 사용시간----------. 1.~2. (현행과 같음) 3. 야간 : 18:00 ~ 22:00 4. 설날과 추석 연휴기간은 휴무일로 한다.
제8조(사용료) ①~④ (생략) <신설>	제8조(사용료)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체육시설 내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는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과 동액으로 본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 수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체육경기와 체육행사 :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 2. 프로경기와 일반행사 :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0분의 15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는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과 동액으로 본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 수입에 대해서는 관람권 수입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관람권 발행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미리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④ 총 관람권 발행 매수의 100분의 10 이하의 초대권은 관람권 수입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은 일반관람권으로 본다.
제10조(전용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2. 체육진흥, 체육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제규모의 경기 또는 행사 나.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 3. 민속제나 고유민속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 4. 노인, 장애인, 수급자, 군인, 어린이, 청소년,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전용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2.「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주최(주관)하는 교육 행사 3. 체육진흥, 체육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제규모의 경기 또는 행사 나.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 4. 고유민속이나 대중문화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 5. 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 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6. 경기도 및 시의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시(체육회) 및 교육지원청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현 행	개 정 안
	7. 시를 연고로 하며 시장이 구단주인 프로구단 및 실업팀의 정식경기 8. 시를 연고로 하나 시장이 구단주가 아닌 프로구단 및 실업팀의 정식 경기(단, 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제외) 9.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생략) 1. (생략) 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 사용료의 4할 나. 사용개시 10일전까지 : 사용료의 6할 다. 사용개시 20일전까지 : 사용료의 8할 라. 사용개시 30일전까지 : 전액 2.~3. (생략) ②~④ (생략)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 ----- 6할 나. ---------- : 전액 다.<삭제> 라.<삭제> 2.~3.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② (생략) <신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위탁) ①~② (생략)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와 그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가입할 수 있다.

[별표 1]

전 용 사 용 료

(단위 : 원)

사용구분			체육경기(행사)		일반행사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안산와~스타디움	육상장(트랙)	주간	40,000	60,000	200,000	300,000
		야간	60,000	90,000	300,000	400,000
	축구잔디구장 주경기장	주간	660,000	2,000,000	1,500,000	2,200,000
		야간	1,500,000	2,400,000	2,000,000	2,600,000
	축구잔디구장 보조경기장	주간	200,000	300,000	300,000	400,000
		야간	300,000	400,000	400,000	500,000
생활체육관 국궁장		주간	23,000	35,000	46,000	70,000
		야간	35,000	50,000	70,000	100,000
실내체육관		주간	60,000	90,000	120,000	180,000
		야간	100,000	130,000	160,000	220,000

[별표 1]

전 용 사 용 료

(단위 : 원)

사용구분			체육경기(행사)		일반행사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안산와~스타디움	육상장(트랙)	주간	40,000	60,000	200,000	300,000
		야간	60,000	90,000	300,000	400,000
	축구잔디구장 주경기장	주간	660,000	2,000,000	1,500,000	2,200,000
		야간	1,500,000	2,400,000	2,000,000	2,600,000
	축구잔디구장 보조경기장	주간	200,000	300,000	300,000	400,000
		야간	300,000	400,000	400,000	500,000
생활체육관 국궁장		주간	30,800	46,200	61,600	92,400
		야간	39,600	59,400	79,200	118,800
실내체육관		주간	70,000	100,000	140,000	200,000
		야간	90,000	130,000	180,000	260,000

현 행

다목적체육관		주간	90,000	135,000	180,000	270,000
		야간	130,000	175,000	220,000	310,000
인조잔디 축구장	정규 운동장	주·야	60,000	90,000	120,000	180,000
	중형 운동장	주·야	42,000	63,000	84,000	126,000
	소형 운동장	주·야	36,000	54,000	72,000	108,000
야구장	인조잔디	주·야	72,000	108,000	144,000	216,000
	마사토	주간	12,000	18,000	18,000	24,000
<신설>						
<신설>						
<신설>						
테 니 스 장		주간	7,000	10,000	-	-
		야간	10,000	14,000	-	-
마사토운동장 <신설> <신설>		주간	10,000	15,000	15,000	20,000
풋살경기장 (인조잔디 1면)		주간	3,000	4,500	6,000	9,000
<신설>						

비고

1. 조기사용료는 주간사용료에 준하고, 1회 2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체육시설 사용은 1회 4시간(테니스장 · 국궁장 · 풋살경기장은 2시간, 안산 와~ 스타디움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의 잔디구장은 3시간) 기준으로 한다.
3. 부대시설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4. 토요일은 공휴일에 준한다.
5. 시설물 설치 및 철거기간은 전용사용으로 간주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6. 매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회 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와~스타디움의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계산하여 추가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7. 체육관 규격 기준 (건축연면적)
   · 다목적체육관 : 4,000㎡이상
   · 실내체육관 : 2,000㎡이상, 4,000㎡미만
   · 생활체육관 : 2,000㎡미만
8. 인조잔디축구장 규격 기준 (운동장 면적)
   · 정규운동장 : 5,000㎡이상
   · 중형운동장 : 3,000㎡이상, 5,000㎡미만
   · 소형운동장 : 3,000㎡미만

<신설>

개 정 안

다목적체육관		주간	90,000	135,000	180,000	270,000
		야간	130,000	175,000	220,000	310,000
인조잔디 축구장	정규 운동장	주간	73,000	110,000	146,000	220,000
		야간	95,000	143,000	190,000	286,000
	중형 운동장	주간	58,000	87,000	116,000	174,000
		야간	75,000	113,000	150,000	226,000
	소형 운동장	주간	51,000	76,000	102,000	152,000
		야간	66,000	99,000	132,000	198,000
야구장	인조잔디	주간	88,000	132,000	176,000	264,000
		야간	114,000	171,000	228,000	342,000
	마사토	주간	12,000	18,000	18,000	24,000
천연잔디 축구장	호수공원	주간	350,000	450,000	1,000,000	1,500,000
	사동해양	주간	180,000	270,000	360,000	540,000
인라인하키장 (호수공원)		4시간	40,000	60,000	60,000	90,000
		1일	100,000	150,000	200,000	300,000
실내베드민턴장		1면	20,000	30,000	40,000	60,000
테 니 스 장		주간	7,000	10,000	-	-
		야간	10,000	14,000	-	-
마사토운동장 임시운동장 어린이체육시설		주간	10,000	15,000	15,000	20,000
풋살경기장 (인조잔디)		주간	4,000	6,000	8,000	12,000
인공암벽등반장		주간	38,000	48,000	-	-
		야간	48,000	60,000	-	-

비고

1. 조기사용료는 주간사용료에 준하고, 1회 2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체육시설 사용은 1회 4시간(테니스장 · 국궁장 · 풋살경기장은 2시간, 안산 와~ 스타디움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의 잔디구장은 3시간) 기준으로 하고 필요시 2시간 단위로 운영 할 수 있다.
3. 부대시설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4. 토요일은 공휴일에 준한다.
5. 시설물 설치 및 철거기간은 전용사용으로 간주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6. 매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회 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와~스타디움의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계산하여 추가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7. 체육관 규격 기준 (건축연면적)
   · 다목적체육관 : 4,000㎡이상
   · 실내체육관 : 2,000㎡이상, 4,000㎡미만
   · 생활체육관 : 2,000㎡미만
8. 인조잔디축구장 규격 기준 (운동장 면적)
   · 정규운동장 : 5,000㎡이상
   · 중형운동장 : 3,000㎡이상, 5,000㎡미만
   · 소형운동장 : 3,000㎡미만
9.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현 행

[별표 2]

연 습 사 용 료

(단위 : 원)

사용구분		기 준	사용료	
			개 인	단 체
안산 와~스타디움(보조경기장)	육상장(트랙)	1회 2시간	1,500	800
<신설> 실내체육관 국궁장		1인 2시간	1,200	600
인조잔디축구장		〃	1,200	600
<신설>				
<신설>				
<신설>				
테니스장	주 간	〃	3,000	1,500
	야 간	〃	5,000	1,500
체 력 단 련 장		월	30,000	-
<신설>				
<신설>				
<신설>				
비고		1. 단체는 동일팀에 소속된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2. 시립테니스장의 월회원은 단체, 개인을 불문하고 매월 20,000원으로 한다. 3.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4. 초·중·고 및 도·시 대표선수단의 강화훈련을 위한 무료사용은 1회 10일 이내로 하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6. 체력단련장은 전용사용료의 감면기준을 적용한다. 7. 체력단련장은 그린카드 소유자에게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중복감면은 불가한다. <신설> <신설>	

개 정 안

[별표 2]

연 습 사 용 료

(단위 : 원)

사용구분		기 준	사용료	
			개 인	단 체
안산 와~스타디움(보조경기장)	육상장(트랙)	1회 2시간	1,500	800
생활체육관 실내체육관 국궁장		1인 2시간	1,320	660
인조잔디축구장		〃	1,200	600
실내배드민턴장		1인/4시간 평일	1,000	700
		1인/4시간 주말/공휴일	1,500	1,200
인라인 하키장 (호수공원)		1인 2시간	1,200	600
인공암벽 등반장	평 일	1인 2시간	1,500	-
	공휴일	1인 2시간	2,000	-
	월정기		35,000	-
테니스장	주 간	〃	3,000	1,500
	야 간	〃	5,000	1,500
체력단련장	성인	월	33,000	-
	청소년 군인	일	3,300	-
	노인	월	27,500	-
		일	2,750	-
야외수영장		성 인	7,000	3,500
		청소년·군인	5,000	2,500
		어린이	4,000	2,000
실내수영장	성 인	월	55,000	44,000
		일	2,700	2,200
	청소년 군인	월	46,000	37,000
		일	2,300	18,000
	어린이 ·노인	월	38,000	30,000
		일	1,900	1,500
목욕장	성인 청소년 군인	일	5,000	
	노인 어린이	일	3,000	
비고		1. 단체는 동일팀에 소속된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 삭제 > 2.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3. 시·도 단위 이상의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는 안산시 대표선수단의 강화훈련을 위한 무료사용은 대회 및 경기당 10회 이하로 하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 삭제 > 5. 체력단련장, 실내수영장은 그린카드 소유자에게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중복감면은 불가) 6. 실내수영장 월 이용자는 지도자 수강료 포함한다. 7.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생략>	[별표3] <현행과 같음>
[별표 4] <생략>	[별표4] <현행과 같음>

[별표 5]

부 대 시 설 사 용 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라이트 시설	안산 와~스타디움	(라이트 전기용량 × kw당 기본료 ÷ 30) + (라이트 전기용량 × 사용시간 × kw당 단가)
	기타 체육시설	1시간 15,000원
무대조명		1시간 20,000원
냉·난방	개별냉난방기	냉방 : 1대당(1시간) 5,000원 난방 : 1대당(1시간) 10,000원
	중앙냉난방기	냉방 : 1시간 35,000원 난방 : 1시간 45,000원
전광판 (스코어판 포함)	안산 와~스타디움	기본료 200,000원(영상부문 및 녹화비 포함) + (전광판 전기용량 × 사용시간 × kw당 단가)
	기타 체육시설	1시간 10,000원
음향시설		4시간 20,000원
영 사 기		1시간 20,000원
농구골대		1일 50,000원
비 고		1.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2. 무대장치 작업 및 연습 등을 위하여 무대만 사용할 경우 조명료 50% 경감 3. 음향시설 사용 외에 마이크 추가시 1대당 5,000원 부과 4. 운영요원(전광판 조작요원 포함)은 주최측에서 준비한다.

[별표 5]

부 대 시 설 사 용 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라이트 시설	안산 와~스타디움	(라이트 전기용량 × kw당 기본료 ÷ 30) + (라이트 전기용량 × 사용시간 × kw당 단가)
	기타 체육시설	1시간 15,000원
무대조명		1시간 20,000원
냉·난방	개별냉난방기	냉방 : 1대당(1시간) 5,000원 난방 : 1대당(1시간) 10,000원
	중앙냉난방기	냉방 : 1시간 35,000원 난방 : 1시간 45,000원
전광판 (스코어판 포함)	안산 와~스타디움	기본료 200,000원(영상부문 및 녹화비 포함) + (전광판 전기용량 × 사용시간 × kw당 단가)
	기타 체육시설	1시간 10,000원
음향시설		4시간 20,000원
영 사 기		1시간 20,000원
삭 제		
비 고		1.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2. 무대장치 작업 및 연습 등을 위하여 무대만 사용할 경우 조명료 50% 경감 3. 음향시설 사용 외에 마이크 추가시 1대당 5,000원 부과 4. 운영요원(전광판 조작요원 포함)은 주최측에서 준비한다.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2577

제안년월일 : 2014년 12월 9일
제 안 자 : 문화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관람권 수입에 대해 신설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체육시설로 대관이 적절하지 않은 시설을 삭제하여 지역주민이 여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시설 연습사용 시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는 초·중·고 선수단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함.

2. 주요내용

○ 초대권에 대한 관람권 수입 제외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9조제4항).

○ 전용사용료를 징수하는 천연잔디 축구장 중 '사동해양'을 삭제함(별표 1).

○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는 초·중·고 선수단이 체육시설 사용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별표 2).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4-12-24 10:12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4항 중 “제외할 수 있으며”를 “제외하며”로 한다.

안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안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전 용 사 용 료

(단위 : 원)

사용구분				체육경기(행사)		일반행사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안산와~스타디움	육상장(트랙)		주간	40,000	60,000	200,000	300,000
			야간	60,000	90,000	300,000	400,000
	축구잔디구장	주경기장	주간	660,000	2,000,000	1,500,000	2,200,000
			야간	1,500,000	2,400,000	2,000,000	2,600,000
		보조경기장	주간	200,000	300,000	300,000	400,000
			야간	300,000	400,000	400,000	500,000
생활체육관 국궁장			주간	30,800	46,200	61,600	92,400
			야간	39,600	59,400	79,200	118,800
실내체육관			주간	70,000	100,000	140,000	200,000
			야간	90,000	130,000	180,000	260,000
다목적체육관			주간	90,000	135,000	180,000	270,000
			야간	130,000	175,000	220,000	310,000
인조잔디축구장	정규운동장		주간	73,000	110,000	146,000	220,000
			야간	95,000	143,000	190,000	286,000
	중형운동장		주간	58,000	87,000	116,000	174,000
			야간	75,000	113,000	150,000	226,000
	소형운동장		주간	51,000	76,000	102,000	152,000
			야간	66,000	99,000	132,000	198,000
야구장	인조잔디		주간	88,000	132,000	176,000	264,000
			야간	114,000	171,000	228,000	342,000
	마사토		주간	12,000	18,000	18,000	24,000
천연잔디축구장(호수공원)			주간	350,000	450,000	1,000,000	1,500,000
인라인하키장(호수공원)			4시간	40,000	60,000	60,000	90,000
			1일	100,000	150,000	200,000	300,000
실내배드민턴장			1면	20,000	30,000	40,000	60,000
테니스장			주간	7,000	10,000	-	-
			야간	10,000	14,000	-	-
마사토운동장			주간	10,000	15,000	15,000	20,000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4-12-24 10:12

임시운동장 어린이체육시설					
풋살경기장 (인조잔디)	주간	4,000	6,000	8,000	12,000
인공암벽등반장	주간	38,000	48,000	-	-
	야간	48,000	60,000	-	-
비고	1. 조기사용료는 주간사용료에 준하고, 1회 2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체육시설 사용은 1회 4시간(테니스장 . 국궁장 . 풋살경기장은 2시간, 안산 와~스타디움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의 잔디구장은 3시간) 기준으로 하고 필요시 2시간 단위로 운영 할 수 있다. 3. 부대시설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4. 토요일은 공휴일에 준한다. 5. 시설물 설치 및 철거기간은 전용사용으로 간주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6. 매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회 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와~스타디움의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계산하여 추가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7. 체육관 규격 기준 (건축연면적) .다목적체육관 : 4,000㎡이상 .실내체육관 : 2,000㎡이상 ~ 4,000㎡미만 .생활체육관 : 2,000㎡미만 8. 인조잔디축구장 규격 기준 (운동장 면적) .정규운동장 : 5,000㎡이상 .중형운동장 : 3,000㎡이상 ~ 5,000㎡미만 .소형운동장 : 3,000㎡미만 9.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별표 2]

연 습 사 용 료

(단위 : 원)

사용구분		기 준	사용료	
			개 인	단 체
안산 와~스타디움(보조경기장)	육상장(트랙)	1회 2시간	1,500	800
생활 체육관 실내 체육관 국 궁 장		1인 2시간	1,320	660
인조잔디축구장		1인 2시간	1,200	600
실내배드민턴장		1인/4시간 평일	1,000	700
		1인/4시간 주말/공휴일	1,500	1,200
인라인 하키장(호수공원)		1인 2시간	1,200	600
인공암벽 등반장	평 일	1인 2시간	1,500	-
	공휴일	1인 2시간	2,000	-
	월정기		35,000	-
테니스장	주 간	1인 2시간	3,000	1,500
	야 간	1인 2시간	5,000	1,500
체력단련장	성인 청소년 군인	월	33,000	-
		일	3,300	-
	노인	월	27,500	-
		일	2,750	-
야외수영장		성 인	7,000	3,500
		청소년·군인	5,000	2,500
		어린이	4,000	2,000
실내수영장	성 인	월	55,000	44,000
		일	2,700	2,200
	청소년 군인	월	46,000	37,000
		일	2,300	1,800
	어린이 노인	월	38,000	30,000
		일	1,900	1,500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4-12-24 10:12

목욕장	성인 청소년 군인	일	5,000	-
	노인 어린이	일	3,000	-
비고		1. 단체는 동일팀에 소속된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2.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3. 시·도 단위 이상의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는 안산시 초·중·고 및 대표선수단의 강화훈련을 위한 무료사용은 대회 및 경기당 10회 이하로 하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5. 체력단련장, 실내수영장은 그린카드 소유자에게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중복감면은 불가) 6. 실내수영장 월 이용자는 지도자 수강료 포함한다. 7.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9조(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 수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체육경기와 체육행사 : 관람권 수입총액의 100분의 10 2. 프로경기와 일반행사 : 관람권 수입총액의 100분의 15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제9조(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 수입에 대해서는 관람권 수입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관람권 발행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미리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④ 총 관람권 발행 매수의 100분의 10 이하의 초대권은 관람권 수입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은 일반관람권으로 본다.	**제9조(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④ ---------- 제외하며, ----------.

현행

[별표 1]

전 용 사 용 료

(단위 : 원)

사용구분			체육경기(행사)		일반행사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안산와~스타디움	육상장(트랙)	주간	40,000	60,000	200,000	300,000
		야간	60,000	90,000	300,000	400,000
	축구잔디 주경기장	주간	660,000	2,000,000	1,500,000	2,200,000
		야간	1,500,000	2,400,000	2,000,000	2,600,000
	보조경기장	주간	200,000	300,000	300,000	400,000
		야간	300,000	400,000	400,000	500,000
생활체육관 국궁장		주간	23,000	35,000	46,000	70,000
		야간	35,000	50,000	70,000	100,000
실내체육관		주간	60,000	90,000	120,000	180,000
		야간	100,000	130,000	160,000	220,000
다목적체육관		주간	90,000	135,000	180,000	270,000
		야간	130,000	175,000	220,000	310,000
인조잔디 축구장	정규운동장	주.야	60,000	90,000	120,000	180,000
	중형운동장	주.야	42,000	63,000	84,000	126,000
	소형운동장	주.야	36,000	54,000	72,000	108,000
야구장	인조잔디	주.야	72,000	108,000	144,000	216,000
	마사토	주간	12,000	18,000	18,000	24,000
<신설>						
<신설>						
<신설>						
테 니 스 장		주간	7,000	10,000	-	-
		야간	10,000	14,000	-	-
마사토운동장 <신설> <신설>		주간	10,000	15,000	15,000	20,000
풋살경기장 (인조잔디 1면)		주간	3,000	4,500	6,000	9,000
<신설>						

비고

1. 조기사용료는 주간사용료에 준하고, 1회 2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체육시설 사용은 1회 4시간(테니스장 . 국궁장 . 풋살경기장은 2시간, 안산 와~ 스타디움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의 잔디구장은 3시간) 기준으로 한다.
3. 부대시설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4. 토요일은 공휴일에 준한다.
5. 시설물 설치 및 철거기간은 전용사용으로 간주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6. 매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회 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와~ 스타디움의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계산하여 추가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7. 체육관 규격 기준 (건축연면적)
   . 다목적체육관 : 4,000㎡이상
   . 실내체육관 : 2,000㎡이상, 4,000㎡미만
   . 생활체육관 : 2,000㎡미만
8. 인조잔디축구장 규격 기준 (운동장 면적)
   . 정규운동장 : 5,000㎡이상
   . 중형운동장 : 3,000㎡이상, 5,000㎡미만
   . 소형운동장 : 3,000㎡미만

<신설>

개정안

[별표 1]

전 용 사 용 료

(단위 : 원)

사용구분			체육경기(행사)		일반행사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안산와~스타디움	육상장(트랙)	주간	40,000	60,000	200,000	300,000
		야간	60,000	90,000	300,000	400,000
	축구잔디 주경기장	주간	660,000	2,000,000	1,500,000	2,200,000
		야간	1,500,000	2,400,000	2,000,000	2,600,000
	보조경기장	주간	200,000	300,000	300,000	400,000
		야간	300,000	400,000	400,000	500,000
생활체육관 국궁장		주간	30,800	46,200	61,600	92,400
		야간	39,600	59,400	79,200	118,800
실내체육관		주간	70,000	100,000	140,000	200,000
		야간	90,000	130,000	180,000	260,000
다목적체육관		주간	90,000	135,000	180,000	270,000
		야간	130,000	175,000	220,000	310,000
인조잔디 축구장	정규운동장	주간	73,000	110,000	146,000	220,000
		야간	95,000	143,000	190,000	286,000
	중형운동장	주간	58,000	87,000	116,000	174,000
		야간	75,000	113,000	150,000	226,000
	소형운동장	주간	51,000	76,000	102,000	152,000
		야간	66,000	99,000	132,000	198,000
야구장	인조잔디	주간	88,000	132,000	176,000	264,000
		야간	114,000	171,000	228,000	342,000
	마사토	주간	12,000	18,000	18,000	24,000
천연잔디 축구장	호수공원	주간	350,000	450,000	1,000,000	1,500,000
	삼동해양	주간	180,000	270,000	360,000	540,000
인라인하키장 (호수공원)		4시간	40,000	60,000	60,000	90,000
		1일	100,000	150,000	200,000	300,000
실 내 배드민턴장		1면	20,000	30,000	40,000	60,000
테니스장		주간	7,000	10,000	-	-
		야간	10,000	14,000	-	-
마사토운동장 임시운동장 어 린 이 체육시설		주간	10,000	15,000	15,000	20,000
풋살경기장 (인조잔디)		주간	4,000	6,000	8,000	12,000
인 공 암벽등반장		주간	38,000	48,000	-	-
		야간	48,000	60,000	-	-

비고

1. 조기사용료는 주간사용료에 준하고, 1회 2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체육시설 사용은 1회 4시간(테니스장 . 국궁장 . 풋살경기장은 2시간, 안산 와~ 스타디움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의 잔디구장은 3시간) 기준으로 하고 필요시 2시간 단위로 운영 할 수 있다.
3. 부대시설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4. 토요일은 공휴일에 준한다.
5. 시설물 설치 및 철거기간은 전용사용으로 간주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6. 매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회 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와~ 스타디움의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계산하여 추가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7. 체육관 규격 기준 (건축연면적)
   .다목적체육관 : 4,000㎡이상
   .실내체육관 : 2,000㎡이상, 4,000㎡미만
   .생활체육관 : 2,000㎡미만
8. 인조잔디축구장 규격 기준 (운동장 면적)
   .정규운동장 : 5,000㎡이상
   .중형운동장 : 3,000㎡이상, 5,000㎡미만
   .소형운동장 : 3,000㎡미만
9.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수정안

[별표 1]

전 용 사 용 료

(단위 : 원)

사용구분			체육경기(행사)		일반행사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안산와~스타디움	육상장(트랙)	주간	40,000	60,000	200,000	300,000
		야간	60,000	90,000	300,000	400,000
	축구잔디 주경기장	주간	660,000	2,000,000	1,500,000	2,200,000
		야간	1,500,000	2,400,000	2,000,000	2,600,000
	보조경기장	주간	200,000	300,000	300,000	400,000
		야간	300,000	400,000	400,000	500,000
생활체육관 국궁장		주간	30,800	46,200	61,600	92,400
		야간	39,600	59,400	79,200	118,800
실내체육관		주간	70,000	100,000	140,000	200,000
		야간	90,000	130,000	180,000	260,000
다목적체육관		주간	90,000	135,000	180,000	270,000
		야간	130,000	175,000	220,000	310,000
인조잔디 축구장	정규운동장	주간	73,000	110,000	146,000	220,000
		야간	95,000	143,000	190,000	286,000
	중형운동장	주간	58,000	87,000	116,000	174,000
		야간	75,000	113,000	150,000	226,000
	소형운동장	주간	51,000	76,000	102,000	152,000
		야간	66,000	99,000	132,000	198,000
야구장	인조잔디	주간	88,000	132,000	176,000	264,000
		야간	114,000	171,000	228,000	342,000
	마사토	주간	12,000	18,000	18,000	24,000
천연잔디 축구장	호수공원	주간	350,000	450,000	1,000,000	1,500,000
	<삭제>					
인라인하키장 (호수공원)		4시간	40,000	60,000	60,000	90,000
		1일	100,000	150,000	200,000	300,000
실 내 배드민턴장		1면	20,000	30,000	40,000	60,000
테니스장		주간	7,000	10,000	-	-
		야간	10,000	14,000	-	-
마사토운동장 임시운동장 어 린 이 체육시설		주간	10,000	15,000	15,000	20,000
풋살경기장 (인조잔디)		주간	4,000	6,000	8,000	12,000
인 공 암벽등반장		주간	38,000	48,000	-	-
		야간	48,000	60,000	-	-

비고

1. 조기사용료는 주간사용료에 준하고, 1회 2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체육시설 사용은 1회 4시간(테니스장 . 국궁장 . 풋살경기장은 2시간, 안산 와~ 스타디움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의 잔디구장은 3시간) 기준으로 하고 필요시 2시간 단위로 운영 할 수 있다.
3. 부대시설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4. 토요일은 공휴일에 준한다.
5. 시설물 설치 및 철거기간은 전용사용으로 간주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6. 매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회 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와~ 스타디움의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계산하여 추가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7. 체육관 규격 기준 (건축연면적)
   .다목적체육관 : 4,000㎡이상
   .실내체육관 : 2,000㎡이상, 4,000㎡미만
   .생활체육관 : 2,000㎡미만
8. 인조잔디축구장 규격 기준 (운동장 면적)
   .정규운동장 : 5,000㎡이상
   .중형운동장 : 3,000㎡이상, 5,000㎡미만
   .소형운동장 : 3,000㎡미만
9.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현행

[별표 2]

연 습 사 용 료

(단위 : 원)

사용구분		기 준	사 용 료	
			개 인	단 체
안산 와~스타디움(보조경기장)	육상장(트랙)	1회 2시간	1,500	800
<신설> 실내 체육관 국 궁 장		1인 2시간	1,200	600
인조잔디축구장		〃	1,200	600
<신설>				
<신설>				
<신설>				
테니스장	주 간	〃	3,000	1,500
	야 간	〃	5,000	1,500
체 력 단 련 장		월	30,000	-
<신설>				
<신설>				
<신설>				

비고

1. 단체는 동일팀에 소속된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2. 시립테니스장의 월회원은 단체, 개인을 불문하고 매월 20,000원으로 한다.
3.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4. 초·중·고 및 도·시 대표선수단의 강화훈련을 위한 무료사용은 1회 10일 이내로 하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6. 체력단련장은 전용사용료의 감면기준을 적용한다.
7. 체력단련장은 그린카드 소유자에게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중복감면은 불가한다.

<신설>

<신설>

개정안

[별표 2]

연 습 사 용 료

(단위 : 원)

사 용 구 분		기 준	사 용 료	
			개 인	단 체
안산 와~스타디움(보조경기장)	육상장(트랙)	1회 2시간	1,500	800
생활 체육관 실내 체육관 국 궁 장		1인 2시간	1,320	660
인조잔디축구장		〃	1,200	600
실내배드민턴장		1인/4시간 평일	1,000	700
		1인/4시간 주말/공휴일	1,500	1,200
인라인 하키장 (호수공원)		1인 2시간	1,200	600
인공암벽 등 반 장	평 일	1인 2시간	1,500	-
	공휴일	1인 2시간	2,000	-
	월정기		35,000	-
테니스장	주 간	〃	3,000	1,500
	야 간	〃	5,000	1,500
체 력 단 련 장	성 인	월	33,000	-
	청소년 군 인	일	3,300	-
	노 인	월	27,500	-
		일	2,750	-
야외수영장		성 인	7,000	3,500
		청소년·군인	5,000	2,500
		어린이	4,000	2,000
실 내 수영장	성 인	월	55,000	44,000
		일	2,700	2,200
	청소년 군 인	월	46,000	37,000
		일	2,300	1,800
	어린이·노 인	월	38,000	30,000
		일	1,900	1,500
목욕장	성 인 청소년 군 인	일	5,000	-
	노 인 어린이	일	3,000	-

비고

1. 단체는 동일팀에 소속된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 삭제 >
2.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3. 시·도 단위 이상의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는 안산시 대표선수단의 강화훈련을 위한 무료사용은 대회 및 경기당 10회 이하로 하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 삭제 >
5. 체력단련장, 실내수영장은 그린카드 소유자에게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중복감면은 불가)
6. 실내수영장 월 이용자는 지도자 수강료 포함한다.
7.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수정안

[별표 2]

연 습 사 용 료

(단위 : 원)

사 용 구 분		기 준	사 용 료	
			개 인	단 체
안산 와~스타디움(보조경기장)	육상장(트랙)	1회 2시간	1,500	800
생활 체육관 실내 체육관 국 궁 장		1인 2시간	1,320	660
인조잔디축구장		〃	1,200	600
실내배드민턴장		1인/4시간 평일	1,000	700
		1인/4시간 주말/공휴일	1,500	1,200
인라인 하키장 (호수공원)		1인 2시간	1,200	600
인공암벽 등 반 장	평 일	1인 2시간	1,500	-
	공휴일	1인 2시간	2,000	-
	월정기		35,000	-
테니스장	주 간	〃	3,000	1,500
	야 간	〃	5,000	1,500
체 력 단 련 장	성 인	월	33,000	-
	청소년 군 인	일	3,300	-
	노 인	월	27,500	-
		일	2,750	-
야외수영장		성 인	7,000	3,500
		청소년·군인	5,000	2,500
		어린이	4,000	2,000
실 내 수영장	성 인	월	55,000	44,000
		일	2,700	2,200
	청소년 군 인	월	46,000	37,000
		일	2,300	1,800
	어린이·노 인	월	38,000	30,000
		일	1,900	1,500
목욕장	성 인 청소년 군 인	일	5,000	-
	노 인 어린이	일	3,000	-

비고

1. 단체는 동일팀에 소속된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 삭제 >
2.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3. 시·도 단위 이상의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는 안산시 초·중·고 및 대표선수단의 강화훈련을 위한 무료사용은 대회 및 경기당 10회 이하로 하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 삭제 >
5. 체력단련장, 실내수영장은 그린카드 소유자에게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중복감면은 불가)
6. 실내수영장 월 이용자는 지도자 수강료 포함한다.
7.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